

#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

## 1. 개정이유

가. 신사옥 구내식당을 운영할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해 구내식당관리 분야의 채용자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운영직의 등급별 해당 자격기준에 구내식당관리 분야 신설(별표 3)

1) 구내식당관리 분야를 신설하고 해당 자격기준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로 함

## 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생략 :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제1항제4호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제3항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: 2026. 4. 13. 원안가결

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운 기

2026년 4월 17일

내규 제678호

##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

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**현행**

운영직의 등급별 해당 자격기준(제20조 관련)

구분 분야	운영 1 ~ 2급	운영 3 ~ 4급	비고
전기	○ 전기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 ○ 유사직종 급수 포함	○ 전기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○ 유사직종 급수 포함	
통신	○ 통신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	○ 통신과 관련된 기능사 이상 ○ 유사직종 급수 포함	
기계	○ 기계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	○ 기계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	
난방	○ 열 관리산업기사 이상 ○ 유사직종 급수포함	○ 열 관리기능사 이상 ○ 유사직종 급수포함	
운전	○ 제1종 대형 운전면허 ○ 제1종 보통 운전면허	○ 제1종 대형 운전면허 ○ 제1종 보통 운전면허	
전산	○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○ 유사직종 급수포함	○ 정보처리 기능사 이상 ○ 유사직종 급수포함	
워드 프로세서	<삭 제>		
사무보조	○ 사무보조원(전산세무회계 관련 초급 자격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비서 3급 이상 등의 자격 소지자) ○ 경비원(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)		

※ 사무보조 분야 자격은 필요시 자격기준을 달리하거나 자격기준을 두지 않을 수 있음

## 개정안

### 운영직의 등급별 해당 자격기준(제20조 관련)

구분 분야	운영 1 ~ 2급	운영 3 ~ 4급	비고
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</li> <li>○ 유사직종 급수 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</li> <li>○ 유사직종 급수 포함</li> </ul>	
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신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신과 관련된 기능사 이상</li> <li>○ 유사직종 급수 포함</li> </ul>	
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계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계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</li> </ul>	
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열 관리산업기사 이상</li> <li>○ 유사직종 급수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열 관리기능사 이상</li> <li>○ 유사직종 급수포함</li> </ul>	
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종 대형 운전면허</li> <li>○ 제1종 보통 운전면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종 대형 운전면허</li> <li>○ 제1종 보통 운전면허</li> </ul>	
전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</li> <li>○ 유사직종 급수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처리 기능사 이상</li> <li>○ 유사직종 급수포함</li> </ul>	
워드 프로세서	<삭 제>		
사무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무보조원(전산세무회계 관련 초급 자격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비서 3급 이상 등의 자격 소지자)</li> <li>○ 경비원(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)</li> </ul>		
구내식당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</li> </ul>		

※ 사무보조 분야 자격은 필요시 자격기준을 달리하거나 자격기준을 두지 않을 수 있음

#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

## 1. 개정이유

가. 정보공개심의회는 현재 운영상황 및 상위법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)에 맞게 내규를 현행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심의회 구성 관련 내용 개정(제2조)

- 1) 현재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, 상위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심의회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, 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제2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사실상 위촉할 수 없음
- 2) 심의회 구성내용을 상위법과 맞추어, 인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. 또한, 제2항 각 호를 삭제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
- 3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

나. 목적조문의 약칭을 이동(제1조,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)

## 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: 2026. 3. 13. ~ 2026. 3. 19.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: 2026. 3. 13. ~ 2026. 3. 19.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: 2026. 4. 13. 수정가결

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4월 17일

내규 제679호

##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

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인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된다.

③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제2호 중 “법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사”를 “인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내규는 「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에 따라 <u>인천도시공사</u>(이하 “<u>공사</u>”라 한다) <u>정보공개심의회</u>(이하 “<u>심의회</u>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업무의 투명성·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구성)</b> ① <u>심의회</u>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<u>심의회</u>의 위원장은 <u>주관부서</u>의 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주관부서</u>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<u>당연직</u> 위원 : 각 본부의 <u>주무부서장</u></p> <p>2. 그 밖에 <u>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전문가</u> 중에서 <u>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</u></p> <p>③ <u>심의회</u> <u>위원</u>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<u>위촉직</u> <u>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</u>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「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<u>인천도시공사</u> <u>정보공개심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2조(구성)</b> ① <u>정보공개심의회</u>(이하 “<u>심의회</u>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3분의 2는 <u>외부 전문가</u>로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심의회</u>의 위원장은 <u>주관부서</u>의 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주관부서</u>장이 된다.</p> <p>③ <u>외부위원</u>은 <u>정보공개</u>의 업무에 관한 <u>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</u> 중에서 <u>사장이 위촉</u>한다.</p> <p>④ <u>위원</u>장과 <u>부위원</u>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<u>위촉</u>직 <u>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<u>연임</u>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(생 략)</li> </ol>	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「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5조(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)</p> <p>① 공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⑥ (생 략)</p>	<p>제5조(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)</p> <p>① <u>인천도시공사</u>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# 회계관계담당자 재정보증 시행내규 일부개정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사업규모의 확대 및 재정집행구조의 복잡화로 회계관계담당자가 취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책임범위가 확대됨
- 나. 회계관련 사고 발생시 공사와 담당자가 부담하는 잠재적 재정손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금액을 상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분야별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(별표 1)

## 3. 사전절차

- 가. 사규안 입안예고 : 2026. 1. 15. ~ 2026. 1. 21.
- 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: 2026. 1. 15. ~ 2026. 2. 4.
- 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: 2026. 4. 13. 수정가결

회계관계담당자 재정보증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운 기

2026년 4월 17일

내규 제680호

## 회계관계담당자 재정보증 시행내규 일부개정

회계관계담당자 재정보증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현행**

분야별 재정보증 한도액(제4조제2호 관련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재산관리 (물품/재산)	회계 (결산/자금/지출)	세무	보상
감사, 본부장	10	20	50	50
부서장	30	50	100	100
담당자	50	100	200	200

비고 : 세무분야 주무부서의 한도액은 위 세무 재정보증 한도액의 1.5 배로 한다.

**개정안**

분야별 재정보증 한도액(제4조제2호 관련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재산관리 (물품/재산)	회계 (결산/자금/지출)	세무	보상
감사, 본부장	20	40	100	100
부서장	60	100	200	200
팀장, 담당자	100	200	400	400

비고 : 재무분야 주관부서 및 주관부서 본부장의 한도액은 위 세무 재정보증 한도액의 1.5 배로 한다.